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설치 등〉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4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 · 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설치	2
2.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등 근거 마련	8
※ 참고자료	
- 대안학교 현황(53교: 공립 24교, 사립 29교)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9.

다.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Ⅲ. 검토의견

1. 국·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설치

개정안은 국·공립의 대안학교에도 학교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u> 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 -----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학교회계 제도는 2000년 1월 28일 개정¹⁾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에 근거하여 2001년 3월부터 도입되었음. 기존에는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학교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자금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음²⁾. 또한, 교사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1) 법률 제6209호, 2000. 1. 28., 일부개정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쳐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학교회계 제도의 도입으로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결산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음. 또한, 학교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내·외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되면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한편,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³⁾,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53개교(공립 24개교, 사립 29개교, '25.1. 기준)⁴⁾가 운영 중이며, 유사한 명칭을 지닌 대안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연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나,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과는 달리 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3개교 (‘25. 1.)	259개 등록 (‘24. 10.)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운영 지원
	수업료	자율로 정함	운영위 심의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회계 설치 대상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되어 있는바⁵⁾,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대안학교를 학교회계 설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4) 상세내역은 ‘참고자료1: 대안학교 현황’ 참조

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2022년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산정 기준학교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었고⁶⁾, 현재 시·도교육청은 공립 대안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통합사업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24년 시·도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예산지원 현황 >

(단위: 천원)

시도	학교명	설립 구분	학교급	2024년 지원예산	지원내용
서울	서울다솜 관광고등학교	공립	고	408,444	학교기본운영비
부산	송정중학교	공립	중	900,242	통합사업운영비, 학교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
대구	대구해울고등학교	공립	고	14,000	학교기본운영비
인천	인천해밀학교	공립	고	639,097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통합 사업운영비(학교 기본운영비)
인천	인천한누리학교	공립	초·중·고	868,336	통합배부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울산	울산고운중학교	공립	중	311,840	통합사업운영비
세종	세종늘벗학교	공립	중·고	859,812	기본운영비, 가산경비(대안교육운 영), 통합교부사업비
경기	경기새울학교	공립	중	1,212,768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경기	군서미래국제학교	공립	초·중·고	1,638,466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경기	신나는학교	공립	중·고	583,092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강원	노천초등학교	공립	초	665,267	학교기본운영비
충북	은여울중학교	공립	중	532,690	학교운영기본경비, 목적사업비
충북	은여울고등학교	공립	고	607,670	학교운영기본경비, 목적사업비
충남	여해학교	공립	중	599,966	학교운영비
충남	충남다사랑학교	공립	고	938,256	학교운영비

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u>공립·사립 대안학교</u> (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시도	학교명	설립 구분	학교급	2024년 지원예산	지원내용
전남	이음학교	공립	중	320,432	급식비, 급식운영비, 특성화프로그램 인건비
전남	솔가람고등학교	공립	고	560,112	특성화비, 기숙사비, 사감비, 센터운영
경남	경남꿈키움중학교	공립	중	437,210	통합사업운영비
경남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공립	고	90,000	통합사업운영비
경남	밀양영화고등학교	공립	고	90,000	통합사업운영비
경남	김해금곡고등학교	공립	고	75,000	통합사업운영비
경남	거창연극고등학교	공립	고	90,000	통합사업운영비
경남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공립	고	75,000	통합사업운영비

자료: 교육부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과 각 시·도의 「공립 학교 회계규칙」은 구매내역 공개⁷⁾, 재정분석 및 공개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대안학교의 책임감 있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재 모든 국·공립 대안학교에(공립 24개교)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⁹⁾ 개정안은 현실과 부합하고, 사립 대안학교는 「사립 학교법」에 따라¹⁰⁾ 사립학교 고유의 교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7)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예시: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4조의2(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교육감은 관할 학교회계 재정 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9) 2024년 기준 <대안학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현황>에 따르면 모든 공립 대안학교가 재정/회계 교육정보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활용 중에 있음.

10)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있으므로, 형평 차원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국·공립 대안학교에 학교 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것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대안학교는 규모가 작고 행정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심의 절차, 정산 보고 등 행정 절차가 증가하여 실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대안학교의 특수성인 유연한 교육과정 및 운영 방식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부는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학교가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었고,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공립 대안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립 대안학교가 투명하고 책무성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등 근거 마련

개정안은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학교의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생략) <u><신설></u>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u>
<u>②·③</u> (생략)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¹¹⁾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는 NEIS(교무, 학사, 행정, 급여)와 K-에듀

1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과인(회계)이 있음.

한편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¹²⁾은 대안학교에 같은 법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0조의4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0조의5¹³⁾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0조의7¹⁴⁾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임.

따라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의무가 없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1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기준 1개교가 교무/학사 용도로 NEIS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공립 대안학교는 모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사립 대안학교도 다수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 대안학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현황('24.) >

설립 구분	학교 수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현황			
		NEIS (교무/학사)	NEIS (행정)	NEIS (급여)	K-에듀파인 (재정/회계)
공립	23 (100%)	22 (96%)	23 (100%)	23 (100%)	23 (100%)
사립	28 (100%)	24 (86%)	19 (68%)	11 (39%)	16 (57%)
합계	51 (100%)	46 (90%)	42 (82%)	34 (67%)	39 (76%)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회계 업무 등에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통해 대안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여부를 재량으

로 규정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33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53조의3¹⁵⁾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을 받지 않는 각종학교는 여기서 제외하였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차후 이를 지원받으려는 사립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이용 여부가 사실상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 「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 2024년 시·도교육청 사립 대안학교 예산지원 현황 >

시도	학교명	설립 구분	학교급	2024년 지원예산 (단위:천원)	지원내용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	
서울	여명학교	사립	중-고	1,055,350	<u>재정결함보조(인건비)</u>
서울	지구촌학교	사립	초-중-고	1,917,412	<u>재정결함보조(인건비 및 운영비)</u>
부산	장대현 중고등학교	사립	중-고	911,902	<u>통합사업운영비, 학교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u>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	사립	고	942,687	<u>재정결함보조(인건비 및 운영비), 목적사업비, 통합사업운영비(학교 기본운영비) 등</u>
광주	월광기독교학교	사립	초	-	
대전	새소리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	
대전	새소리음악중학교	사립	중	-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사립	초-중	333,036	목적사업비
경기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사립	고	20,282	목적사업비
경기	쉐마글로벌학교	사립	초-중-고	399,682	목적사업비
경기	새나래학교	사립	중-고	-	
경기	광성드림학교	사립	초-중-고	298,517	목적사업비
경기	하늘꿈중고등학교	사립	중-고	906,811	목적사업비
경기	중앙예닮학교	사립	중-고	357,959	목적사업비
경기	노비티스음악중고등학교	사립	중-고	65,835	목적사업비
강원	해밀학교	사립	중	1,563,400	<u>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u>
충북	글로벌선진학교	사립	중-고	323,978	목적사업비
충북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사립	고	54,104	목적사업비
충북	다다예술학교	사립	초-중	80,348	목적사업비
충남	드림학교	사립	고	21,000	목적사업비
전남	월광기독교학교	사립	중-고	159,350	목적사업비, 기숙사비
전남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사립	고	35,090	목적사업비, 기숙사비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사립	초-중-고	50,000	목적사업비
경북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사립	중-고	40,000	목적사업비
경북	산자연중학교	사립	중	550,000	<u>재정결함보조(인건비), 목적사업비</u>
경북	나무와중학교	사립	중	450,000	<u>재정결함보조(인건비), 목적사업비</u>
경북	링컨중고등학교	사립	중-고	-	
경북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사립	고	-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미 대다수의 대안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 중으로,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면서,

현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 학교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여건에 맞는 시스템 활용 및 기능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에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안학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

내안학교 현황 [53교: 공립24교 / 사립29교] (2025. 01. 기준)

시 도	학교명(과정)	설 립 구 분	설 립 연 도	소재지	시 도	학교명(과정)	설 립 구 분	설 립 연 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고)	사립	'08	중구 신당동	강원	해밀학교(중)	사립	'18	홍천군 남면
	여명학교(중·고)	사립	'10	강서구 가양동		노천초등학교(초)	공립	'19	홍천군 동면
	지구촌학교(초·중·고)	사립	'12	구로 오류동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고)	사립	'10	음성군 원남면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고)	공립	'12	종로 송인동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고)	사립	'12	제천시 강계동
부산	송정중학교(중)	공립	'19	강서구 송정동		다다예술학교(초·중)	사립	'17	청주시 상당구
	장대현중고등학교	사립	'23	강서구 신호동		은여울중학교(중)	공립	'17	진천시 문백면
대구	대구해울고등학교	공립	'18	대구 달서구		은여울고등학교(고)	공립	'21	진천군 문백면
						단재고등학교(고)	공립	'25	청주시 상당구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아산시 염치읍
	인천해밀학교(고)	공립	'12	남동 구월동		드림학교(중·고)	사립	'18	천안시 충절로
	인천한누리학교 (초·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논현동		충남다사랑학교(고)	공립	'19	아산시 둔포면
광주	월광기독교학교(초)	사립	'14	서구 화정동	전남	월광기독교학교(중·고)	사립	'18	함평군 대동면
대전	새소리음악고등학교(고)	사립	'11	서구 도마동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고)	사립	'18	강진군 강진읍
	새소리음악중학교(중)	사립	'16	서구 도마동		이음학교	공립	'20	광양시 광양읍
울산	울산고운중학교	공립	'21	울주군 두서면		솔가람고등학교	공립	'21	담양군 봉산면
세종	세종늘벗학교(중·고 통합)	공립	'24	조치원읍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초·중 통합)	사립	'08	고양시 덕양구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1	포항시 북구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연천군 전곡읍		글로벌선진학교문경 (중·고 통합)	사립	'12	문경시 영순면
	쉐마글로벌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1	양주시 은현면		산자연중학교(중)	사립	'13	영천시 화북면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용인시(휴교중)		나무와중학교(중)	사립	'13	영천시 대창면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이천시 읍면		링컨중고등학교(중고 통합)	사립	'17	김천시 대덕면
	광성드림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4	고양시 일산구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고)	사립	'17	경산시 자인면
	하늘꿈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사립	'15	성남시 수정구	경남	경남꿈키움중학교(중)	공립	'14	진주시 이반성면
	중앙예담학교(중·고 통합)	사립	'18	용인시 수지구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고)	공립	'17	고성군 하일면
	노비마스음악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사립	'19	가평군 설악면		밀양영화고등학교(고)	공립	'17	밀양시 상남면
	군서미래국제학교 (초·중·고 통합)	공립	'21	시흥시 정왕동		김해금곡고등학교(고)	공립	'20	김해시 한림면
	신나는 학교(중·고 통합)	공립	'22	안성시 보개면		거창연극고등학교(고)	공립	'20	거창군 위천면
						남해보물섬고등학교(고)	공립	'21	남해군 창선면

자료: 교육부